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ACCOUNTING CORP. VIETNAM



개정국세 및 세무조사 동향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사이공지점
대표이사 조성룡 공인회계사

HP: www.scpavn.com

May 2019

목차

주제	페이지
진출형태와 해당세목	3
개정국세	7
세무조사일반사항	16
법인세	20
VAT환급	23
양도소득세(지분양도)	25
FCT	27
특수관계자 거래와 세무	32
서우회계법인 소개	38

진출형태와 해당세목

베트남 진출형태

	FOE	Foreign contractor
설립근거	Law on Investment, Law on Enterprise	FC 설립 Circular
장점/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시행프로젝트 및 합법적 사업의 수행가능 다수 사업장 동시진행시 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간 결손금 사용 -사업장간 자금공유 -각 사업장마다 허가절차축소 VAS하의 회계/세무관리 상법상의 외국법인 보호 매년 1회 결산 및 사원총회를 거친 후 이익배당가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보다 간편한 설립 및 종결 사업장 종결 전에 수시로 이익금의 송금 가능 초기자본금납입의 부담없음 타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의 FC허가 필요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산출소득(세법상 익급에서 손금을 공제한 산출)에 현행법인세율 적용	FCT법상 산출하는 <u>매출</u> 에 인정과세율(예, 기본건설용역 2-5%, 용역매출 5%, 재화의 공급1%, 로열티 10%,기타 2%)적용
부가세법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의 공제 항상 인정. 타지방의 건설사업시에는 매출부가세 2%를 현장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함.	Withholding method의 경우 매입부가세 불공제, 한시적인 PMO설립시 세무조사 위험 여전히 존재.

과실송금절차

FOE

과실송금 매년 결산 및 사원총회를 거친 후에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익배당가능함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금대여 약정에 의거 본사에 반환송금할 수 있음.
과실송금으로 배당을 선택시 배당에 대한 별도 원천징수세 없음.

외환거래 건설대금 및 용역수수료는 VND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하도급업자나 **Supplier**에겐 외국환 금액으로 송금해야 함. 환위험에 노출됨.

Foreign contractor

외국인 계약자로서 본사로부터 수령한 단기차입금은 자금대여 서류를 증빙으로 모회사에 반환할 수 있음.
공사대금의 기성고는 해당 세금(FCT)으로 법인세율 2%/5%을 납부하고 본사에 수시로 송금이 가능함.

해외구입자재 금액 해당액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USD 등으로 직접 외국인 계약자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수 있음.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회사설립

토지사용료

- 토지사용권

수입관세및 부가세

- 기계장치류
- 수입원자재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 수입원재료 및 수입기계장치
- 수입된 서비스
- 지적재산권거래

회사경영

법인세

부가세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특별소비세 등(해당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부담금

재산세

이전가격세제

회사종결

청산소득법인세

- 청산시점의 법인세 신고
- 청산배당은 비과세

지분양도소득세

- 매도자의 지분처분익의 과세

개정 국세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제조업
일부하청시
수입관세,
국세 관련

OL
4007/
TXNK-
CST

-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한 수입세 면제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발행한 OL에 따르면,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외주를 주는 경우 Decree 134/2016/NĐ-CP에 언급된 면세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입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조사 중 가산세, 가산금부과 2016년부터 소급과세함.
- 베트남 정부의 과세 방향에 대한 이해 필요.
 - ✓제조업 VS 유통업법인세법상 제조업 법인세 감면 해당여부
 - ✓제조업 VS 임가공업임가공업에 대한 불이익 증가.
 - 3자간 무역시 국내이동하는 수입통관제품에 대한 원재료 수입관세 과세:이중과세 이슈
 - 외국인계약자세 1% 과세
 - EPE(보세지역) 허락여부
- ✓수입관세 면제로 재수정하는 입법예고안 계류중이며 변경여부 미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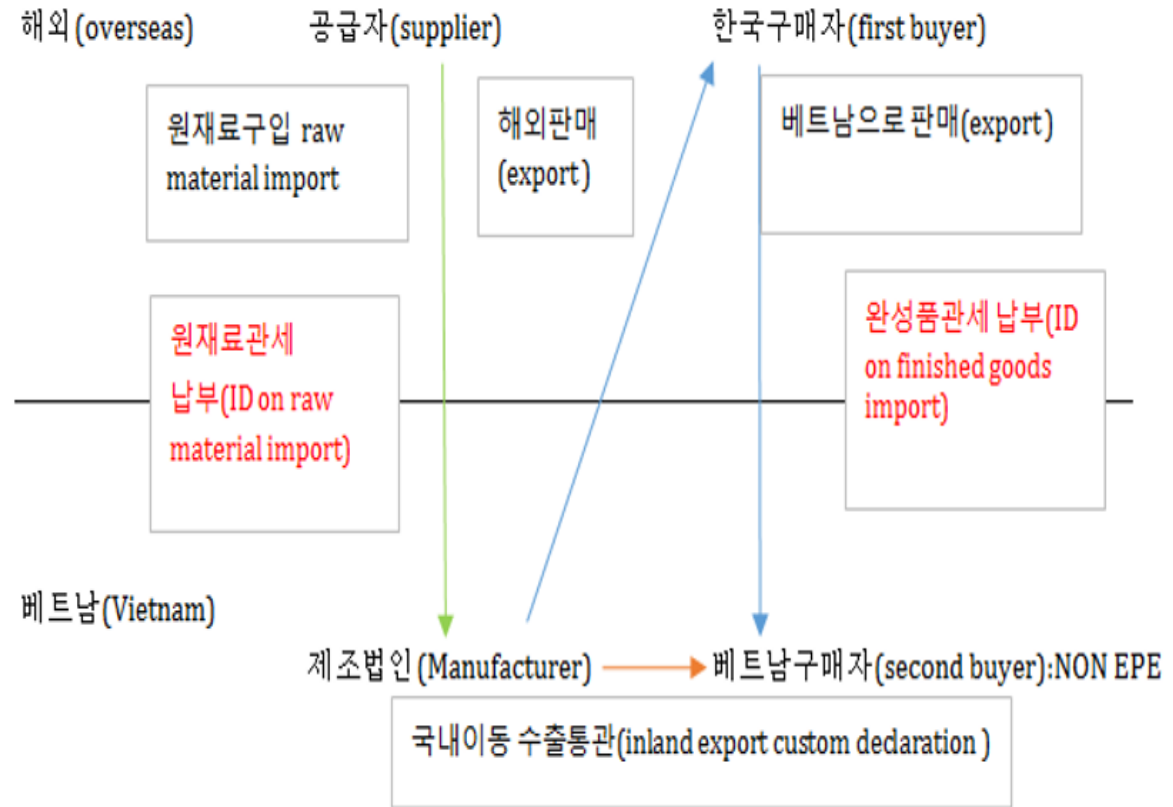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국내이동
수출입통
관거래시
수입원재
료에 대한
수입관세
과세

Official
Letter
No.
5826/TC
HQ-
TXNK
dated 5
October
2018



적용
시사점

- 베트남구매자가 EPE이거나, 해외구매자인 경우
- 베트남구매자가 Non EPE인 경우:2중과세
- 제조법인이 아니라 임가공업체(무상사급거래자)인 경우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 social insurance 대상: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 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
단, 1년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
만 60세이상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근로자는 SI를
면제받습니다.

사회보장보
험료

Decree
143/20
18/ND-
CP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년 1월 이후)	1.5%	0%	1.5%(2021년 12월까지); 9.5%(2022년 1월 이후)
고용인	3.5%(2018년 12월 이후); 17.5%(2022년 1월 이후)	3%	0%	6.5%(2018년 12월 이후); 20.5%(2022년 1월 이후)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계좌 개설 및 이용에 관한 개정사항	Cir. 02/2019/TT-NHNN	지점(branch),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PMO 같은 기관도 베트남내 은행에서 일반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수사업장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신고자		<p>한 지배집단 내의 서로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소득세 확정신고</p> <p>동일 개인소득세 신고년도 안에 그 하나의 지배집단 내에 속해 있는 회사(한 그룹 내 회사 또는 본사와 지점 간)들 사이에 배정되어 그 집단 내 소득원천만 보유한 종업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개인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p>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OL 4389/TCT-T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VND 2백만 이상을 지급:10%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연간 총 VND 2백만이상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소득공제 후 연간 총 과세소득이 없으면, 02/CK-TNCN 서식 수령.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 목적의 은행 계좌 정보	OL) 5018/TCT- K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제시한 외환수령 은행송금증에 수출자의 은행 계좌 정보가 없거나 은행 계좌가 수출 계약서상 지급인 계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수출자 송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부가세환급을 부인합니다.
대표사무소 의 자산 처분	Official Letter 2978/CT- TTHT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대표사무서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 산서 도입	Decree 119/2018/ND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1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기존법인은 경과기간동안 기존의 자가인쇄 세금계산서 사용가능 신설법인은 cir.미비로 자가인쇄 세금계산서만 허용됨.
IFRS도입	draft IFRS roadm	2025회계연도 외국법인(FDI)에도 전면 도입초안 발행.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임시사업장에서 기인한 매출부가세	Official Letter No. 3181/ TCT- K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점이 소재하지 않은 타지방성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매출부가세2%를 이용한 본점의 매입부가세 공제시점은 매출부가세 납부후임.
매입부가세 미신고한 매입부가세는 손금불산입	Official Letter 2622/CT- TTHT	<p>매입부가세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입부가세는 법인세법상 비용불산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부가세의 누락시 부가세 수정신고가능• 매입부가세 누락신고시 법인세 신고가능시점• 불일치시 불이익
서버임대료 의 매출부가세 과세여부	Official Letter No. 2171/TCT- CS	베트남에 소재한 서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해외소재기업에게 청구시 VAT 영세율 적용할 수 없음.
미지급 임금의 비용인정시 기	Official Letter 1703/CT- TTHT a	법인세 연말정산 법정마감기한일까지 미지급한 임금채무는 실재 지급한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손금처리 가능함.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상품매출의
매입부가세
환급

Decree
146/2017/N
D-CP
Circular
25/2018/TT
-BTC

-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 가공 없이 해외 또는 무관세지역 소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기업은 수출 업체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매입부가세 VND 3억동 이상인 해외나 무관세지역 소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수출기업, 해외임가공용역 수출기업으로서 해외매출의 10%를 넘기지 않는 매입부가세가 환급대상에 해당됨. 매입부가세는 수출매출액 10% 내에서만 매입부가세 공제이므로 적자기업은 매입부가세 환급이 일부 부인됨.

법인세 규정
변경

Decree
146/2017/N
D-CP

- 노동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생명보험료, 연금보험/기금 납입액은 인당 월 3백만동 한도로 법인세상 비용 인정이 가능함. 단, 회사가 의무보험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경우에 인정됨.

개정 국세

개정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수입관세 면제	OL14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 14475에 따르면,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입되었으나 국내판매된 스크랩 원자재 및 기타 소모품에 대하여 총 수입량의 3%까지 수입관세가 면제됨. • 베트남 정부의 해당 관세법 재수정안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율제한없이 수입관세 면제로 재수정하는 입법예고안 계류중이며 변경여부 미확정됨.
기술이전계약 등록 의무화	Law on Technology Transfer, 07/2017/QH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규정에 따라 아래 계약의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가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계약 - 베트남으로부터 타국가로의 기술이전 계약 - 정부 자본, 예산이 소요되는 국내 기술이전 계약 • 미등록시 법인세 비용처리 불가. • 2018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세무조사 일반사항

세무조사시 가산세 및 가산금

- 가산금: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가산금은 과소납부세액의 최초 법정납부기일부터 일일 0.05%(2016년 7월부터는 0.03%)의 금리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 본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일반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납부되지 않는 연체기간 동안 일일 추가로 0.05% (2016년 7월부터는 0.03%)의 추가 지연이자도 부과됩니다.

조세불복절차



(*)해저번외에 대한 소송 제기는 행정부에 대한 불복절차와 무관하게 또는 중복되게 진행될 수 있음.

회사의 대응방안

- 세무신고의 적법한 작성 및 적기납부
 - ✓ 세법 규정의 변경시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세무진단을 수행
 - ✓ 검토/세무진단 수행 후 회사의 관련규정 및 처리지침 변경실행
 - ✓ 조세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면제가능성 검토(예컨대, 지분양도소득세의 과세권 면제사례 검토, 단순 수입재화 판매업자에 대한 FCT비과세)
 - ✓ 세무조사전 증빙서류의 사전준비 필수
 - ✓ 조세불복절차의 가능성 검토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조건

- (i) 업무관련성의 입증의무
- (ii)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수령은 하였는가?
- (iii) 2천만동 이상의 결재금액의 계좌이체는 소명가능한가?
- (iv) 손금산입항목으로의 반박입증은 가능한가

사업자의 비용항목중 수익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춘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됨.

2014년 이후 부가세법과 동일하게 지급대가 2천만동 이상에 대한 계좌송금의무 조항 신설됨.



법인세 세무조사동향

주요관심영역: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

(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확장신규사업이 존재하나?)

✓업무관련성 검토

(예컨대, 손금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계약을 통해 실재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개인소득세와 연계된 비용의 증빙테스트 강화

(예컨대, 복리후생비의 과세여부, 회사비용의 개인 전도금을 통한 집행 후 회사미상환의 개인소득 대상여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이익율 추정)

✓손금불산입 비용[회사의 내부증빙자료(재고실사표, 수입원재료 정산 세관신고, 재고자산수불부) 비교대사]

✓국세청 **site**의 공급자 불법거래여부 확인

VAT 환급

VAT 환급



VAT 환급 거절이슈를 예방키 위해 증빙서류를 재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함.

- 매입부가세의 환급조건
 - ✓ VND3억동이상이고 개업준비중 발생매입부가세(즉시환급)
 - ✓ 매입부가세VND 3억동이상인 해외나 무관세지역소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수출기업, 해외임가공용역, 상품수출기업으로서 해외매출액의 10%를 넘기지 않는 매입부가세(즉,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부가세액은 수출매출액 10% 내에서만, 매입부가세 공제)(즉시환급)
 - ✓ 환급대상인 매입부가세라도 자본금출자 미납상태시엔 환급불가
- 매입부가세 세무조사 주요이슈
 - ✓ 매출 신고 및 매입부가세의 기간귀속 이슈주의
 - ✓ 회사설립 전/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사유 점검:법정자본금 완납여부(offshore account 개설 필수)
 - ✓ 환급사유와 환급시기의 일치여부(개업준비시기는 매출발생분기 이전까지)

양도소득세(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지분양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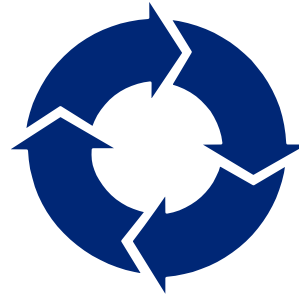
지분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이슈 발생 시 지분 양도소득 신고서, 지분매각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관자간의 거래시 양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유하여야 함
(예: 제3자로 부터 평가 보고서(Valuation report))



재정수입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지분 양도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Risk 가 높은 자본양도 거래

세무 risk 가 높은 자본양도거래에 집중 (예: 양도차익이 없거나 낮은 거래/ 상당한 채무를 이전하는 자본양도거래)



세무감사 목적으로 자본양도 거래들을 List up

2016년부터 세무 감사/조사 목적으로 집중 검토됨.
2017년부터 집중 강화함.

세무조사 대응방안

-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 면제절차 수행;
 - ✓ 부동산과다법인 여부검토
 - ✓ 거주자증명원 및 신청서류 준비
 - ✓ IRC 및 ERC 상 소유자변경절차 완비
- CAPT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양도소득세 매도자는 과거 취득비용 근거필요

FCT 과세강화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FCT 대상: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각종 사용권의 대가,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재보험의 대가, 항공및 국제 운송서비스, 증권의 매매 및 베트남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적용된다.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배당결정액에 대한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세금은 없음.

이자소득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선 5%의 원천징수의무가 베트남 소재 이자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됨. 외국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면제가 가능함.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사용료소득

사용권이나 지적재산권, 기술의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선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외국인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베트남내 법인과 계약하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법적 실체를 세운 외국법인과의 수수료에 과세됨.

FCT 비과세: 단순한 재화의 수입공급, 베트남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서비스, 베트남외부에서 수행된 다음 서비스(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 등)은 **FCT면세대상임.**

조세조약상의 면제(감면)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조약이 **FCT**에 우선하여 적용됨.

과실송금과 관련조세조약

•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베트남내 과세시 활용

- ✓ 조세조약의 원천지국 면제조건 검토

예로서, 고정사업장의 존재시 사업소득 베트남에서 과세, 국책은행
이자소득의 비과세

- ✓ 과실송금시 제한세율 적용가능성 검토

•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한국과세시 활용

-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제23조에 근거해 베트남내에서 납부한 조세는 한국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세법규정에 의거함.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사항없음.

FCT 세무조사 이슈사항

1. 건설 및 설치업 관련

1) 법인세부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용인정여부(Cir 103상 하도급업자 및 하도급업무내용 본 건설계약서에 명기의무화됨. 단순한 건설자재 및 설비, 소모품비 구입은 하도급계약금액 아님. FCT적용세율 과대적용(단순재하청 건설업의 FCT세율 5%)

해외에서 수행된 설계, 자문용역에 대한 FCT과세권 주장(조세조약 적용)

계약금액의 업무별 계약금액 미구분시엔 최대 세율 적용함.

2) 부가세부분:

매출부가세의 발행시기

공사소모성자재(예컨대, 연료, 시멘트, 석재등)의 소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여부:매입부가세불공제 위험가능성 증대됨.

매입부가세의 환급여부(예컨대, 다음의 비용인 골프비용, 직원 주택수당, 내부회식비,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소명불비 접대비등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2. 로열티수입 간주로 고율 과세경향

3. 국내이동 재화수출입거래, 수입재화 및 설치용역, D-term거래에 대한 재화구입금액 과세

특수관계자 거래와 세무

특수관계자 거래유형

과실송금의 근원거래	송금형태	법인세(CIT)	부가세(VAT)
자본금 납입(<i>Charter capital contribution</i>)	배당(Dividend)	면제	면제
차입금 대여(Loan)	이자(interest)	5%	면제
지적재산권 사용료 (<i>Transference of technology or sublicensing of IP</i>)	로열티수수료	10%	5%/면제
마케팅대행 또는 지원서비스 (<i>Sale commissioning</i>)	사업소득수수료	5%	5%
경영지원서비스 (<i>HR, R&D, ERP Set up 및 유지보수, technical support 서비스, 차입보증대행서비스등</i>)	사업소득수수료/ 로열티수수료	5%/10%	5%/면제
베트남으로의 각 종 재화의 공급과 함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재화의 수출; 해외기업(매도자)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부담/위험을 지는 Inco terms 조건(예, DDP, DAT or DAP)	재화판매대금	1%, 단, 재화판매 대금과 서비스 수수 료가 계약서상 구분 되지 않으면, 2%(설 치용역인 경우), 기타 시운전, 교육서비스 의 경우 5%로 증가함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면제됨

배당과 서비스 제공 거래시

배당

- FCT 부담없이 매년 1회에 세후 누적이익잉여금을 본사로 송금가능함.
- 연 1회만 배당결의를 통해 가능하며, 중간배당은 불가함.
- 자회사가 손실인 상황인 경우 배당처분은 불가함.
- 배당결의 전에 전년말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배당결의 후 배당액을 관할 세무서에 최소 7 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함.
- 배당자체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없음.

용역수수료

- 자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기적으로 본사에 송금가능함.
- FCT(CIT 5%, VAT 5%)를 부담함.
- 자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위험(손금불산입 및 이전가격)에 노출될 수 있음.
- 세무조사 시 로열티수입으로 간주되면, FCT(CIT 10%) 부담이 증대됨.
-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함.
 - (1) 회사와 본사 간 용역계약서
 - (2) 수출국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한국의 세금계산서
 - (3) 본사가 수행한 주기적 용역수행실적보고서
 - (4) 개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시간과 수행내용일지
 - (5) 계약서 상 용역대가의 책정방식에 따른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배당과 서비스 제공 거래시

기술이전계약

- 자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기적으로 본사에 송금가능함.
- FCT(CIT 10%)를 부담함.
- 자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위험(손금불산입 및 이전가격)에 노출될 수 있음.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술이전 수수료는 베트남 과세관청에서 손금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기술이전은 별도 과학기술부 등록, 상표권은 특허청 등록 등을 통하여 실제 지적재산이 이전 또는 허여되었음을 입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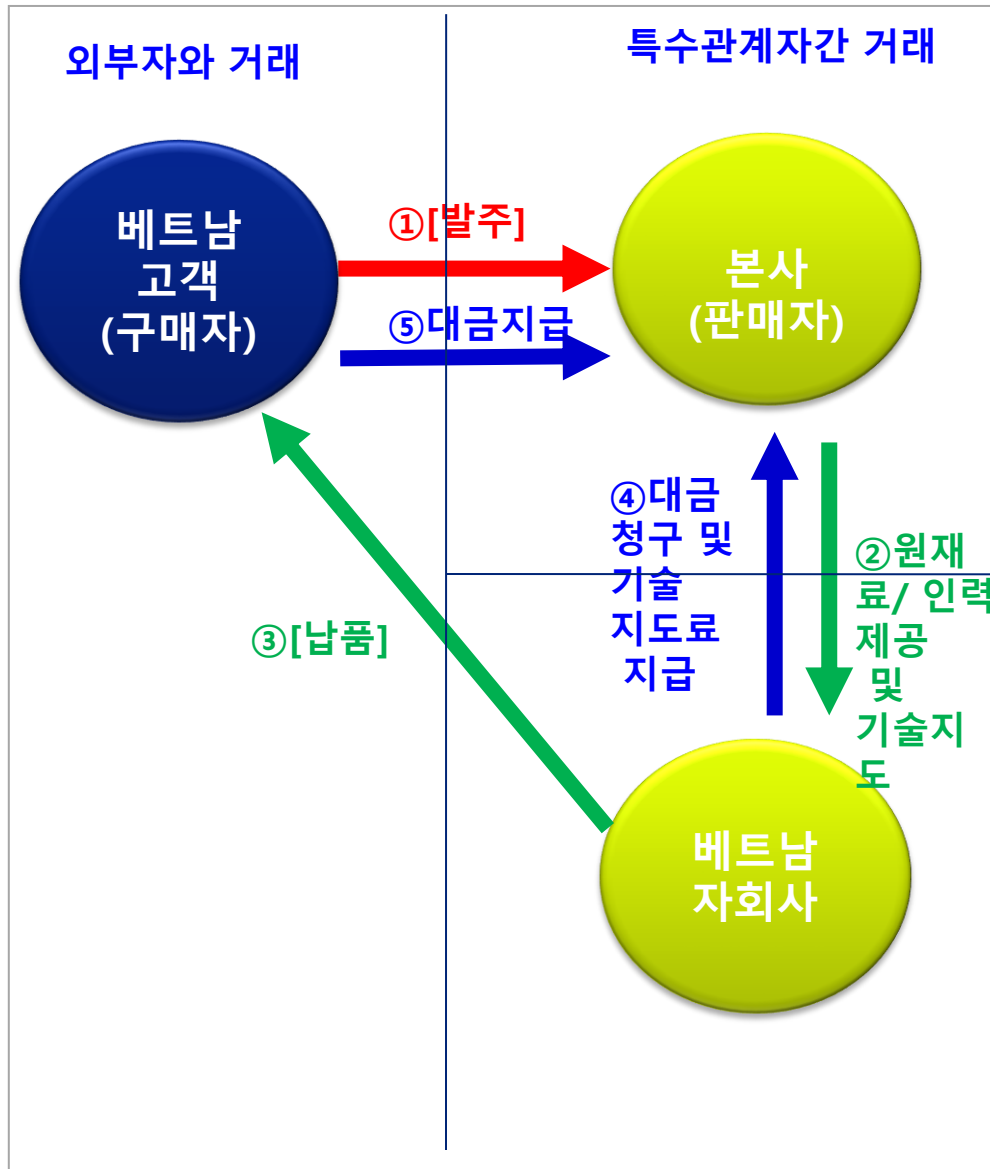
※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법령 (No. 07/2017/QH14)에 근거함.

(2) 해당 지적재산이 회사 운영에 있어 효익이 있음을 입증할 것

(3)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정 로열티율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

Toll manufacturing 방식거래

본사를 통한 고객사 매각거래(본사와 자회사는 임가공거래)



대상세금

□외국인계약자세

납품시;

기술지도료 지급시

□법인세상 비용인정

기술지도료의 업무관련여부

□원재료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베트남내에서 구매자에게 납품시

통관절차

□이전가격세제:본사 및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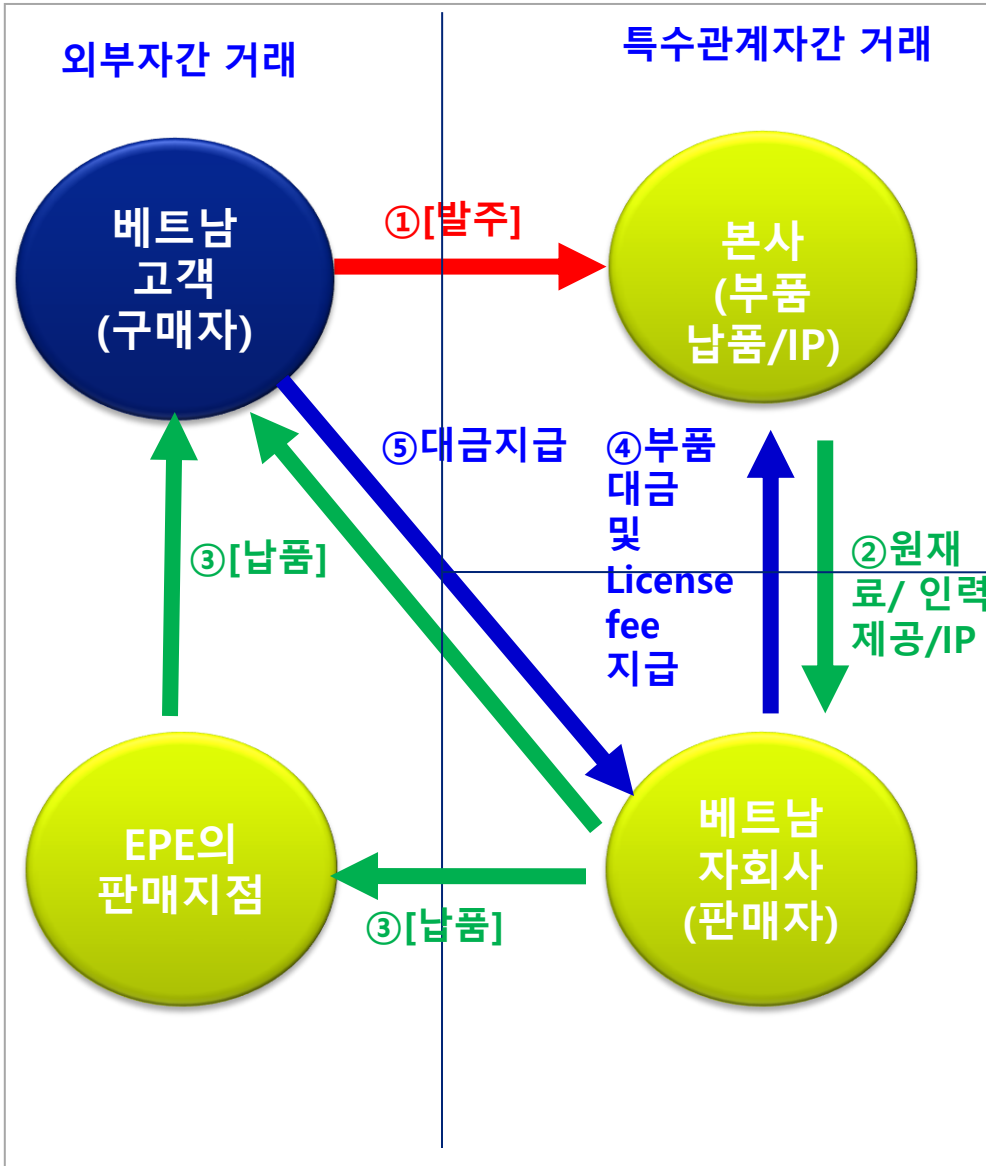
각각의 마진은?

□개인소득세 과세

본사 기술지원 인력

Contract/Licensing manufacturing 방식(현지 직판거래)

본사를 통한 고객사 매각거래(본사와 자회사는 부품유상거래. 임가공거래 없음)



대상세금

- 외국인계약자세
- 부품납품시;
- Royalty 지급시
- 법인세상 비용인정
- 용역료 및 License fee의 업무관련여부
- 관세
- 원재료 베트남 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조건 강화됨(내수판매용 원재료는 항상 과세됨).
- 완성품 판매시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추정
- 베트남내 납품시 통관절차
- 이전가격세제:본사 및 자회사 각각의 마진은?
- 개인소득세 과세
- 본사 기술지원 인력
- 베트남 EPE 가 수입상품을 판매시 판매지점 설립필요

서우회계법인 소개

Our team



조성룡

조성룡 공인회계사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학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
한국 공인회계사(1995)
베트남 공인회계사(2009)
삼일회계법인
Pwc 베트남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회계
자문

*Get in
touch:*
Tel: +84
9854 873
77
E mail:
csrgs@seo
uvn.com



정세영

정세영 공인회계사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사이공 지점

학력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경력
한국 공인회계사(2001)
미국 공인회계사(2009)
삼정회계법인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Get in
touch:*
Tel:+84 33
856 7300
E mail:
sy.chung@s
eouvn.com